

2012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보고서(I)

2012

기 획 재 정 부
보조사업운영평가단

2012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보고서(Ⅱ)

2012

기 획 재 정 부
보조사업운영평가단

I. 평가 요약표

| | |
|-----|--------------------|
| 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 사업명 | (30) 예술창작 및 발표공간지원 |

| 평가기준 | 평가 | |
|---|----|-----|
| | 예 | 아니오 |
| 1 사업추진의 타당성 · 필요성 | | |
| ①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 ✓ | |
| ②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다 | ✓ | |
| ③ 2012년도 및 그 이후에도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 ✓ | |
| 2 재정지원의 타당성 · 필요성 | | |
| ① 2012년도 및 그 이후에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 ✓ | |
| ② 재정지원의 규모가 적정하다 | | ✓ |
| 3 사업내용, 추진방식, 관리의 적절성 | | |
| ① 사업내용(세부사업, 세부과제)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 ✓ | |
| ② 사업추진방식이 적절하다 | ✓ | |
| ③ 사업수행에 대한 관리 ·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절한 통제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 ✓ | |

| 종합판정결과 | | | | | |
|--|--------|------------|--------------|-----------------|-----|
| 정상 추진 | 조건부 준치 | | 폐지 | | |
| | 단계적 감축 | 사업내용 /방식변경 | 즉시폐지 (2013년) | 단계적폐지 (*해당연도표기) | 통폐합 |
| | ✓ | | | | |
|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집행률과 불용액을 근거로 고려할 때, 2012년의 지원액 수준에서 500백만원 내외의 예산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 | | | |

II. 평가 의견서

1. 사업추진의 타당성 · 필요성

① 사업목적의 명확성과 구체성

- 문학, 시각예술 및 공연예술 등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예술장르의 창작 및 발표공간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의 목표는 명확함
 - 예술창작지원과 관련해 문학창작지원,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 증진지원, 다원예술매개공간지원, 문화예술정간물발간 및 조사연구활동지원 등의 세부사업의 목적도 뚜렷함
 - 예술전용공간지원과 관련해 예술전용공간운영지원, 문학창작집필실, 시각예술 창작 및 전시공간지원, 공연예술전용공간지원, 예술전용공간임차지원 등의 세부사업목적도 명확함
 - 이외에 예술창작지원이나 예술행사지원사업의 목적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사업의 법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동법 제16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제1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에 부합
 - 동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명시된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에 과한 조항과 부합
 -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예술위원회의 직무)와도 부합

③ 국가적 사업 필요성

- 시장의 기능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순수예술의 특성상 이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의 확립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음
 -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화예술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의 타당성이 있음
 -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할 경우 커다란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문화예술분야의 투자는 경쟁력을 갖기가 어려움에 따라, 위험부담을 집단적으로 분산한다는 의미에서 국가정책의 개입이 필요함

2. 재정지원의 타당성 · 필요성

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

- 자생력이 약한 예술현장에서 지속적인 순수예술 창작 및 표현활동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동 사업은 공공재원의 지원이 필요
 - 경기침체의 여파로 가계 소득 대비 문화여가비 지출 비율이 감소 추세에 있는 등 창작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아, 창작작품에 대한 관람객 수도 다소 감소될 전망임으로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지원이 필요함

② 재정지원의 규모 적정성

- 2009년의 경우 정부에서 제출한 문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신규로 추가된 사업(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400백만원)이 문예위 최고의결기구인 ‘전체회의(이사회)’에서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지원부결되었고, 사업추진방식의 문제점(문학창작 사후지원금 230백만원 불용), 문화부 감사결과에 따른 사업 취소(다원예술매개공간지원 300백만원) 등의 사유로 인해 일부사업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
- 2010년에도 “예술전용공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서 875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예술전용공간 운영지원사업”에서도 지원대상을 선정하지 못해 203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공모사업 지원금 선정에서도 지원심의 후 지원대상을 선정하지 못해 216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이와 같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집행률과 불용액을 고려할 때, 상당한 액수의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예산감축이 필요하며, 이로 인한 사업추진효과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표 1> 최근 3년간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1(결산) | 2012(예산) | 2013(요구액) |
|-----------------|--------------------|--------------------|----------------|
| 자체사업비 (중앙정부)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 국고보조금 | 13,680백만원 28.7% | 11,500백만원 24.2% | 12,350백만원 % |
| 지자체부담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
| 민간단체부담 | 33,910백만원 71.3% | 36,049백만원 75.8% | 백만원 % |
| 계 | 47,590백만원 100% | 47,549백만원 100% | 백만원 % |

<표 2> 최근 3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09(결산) | 2010(결산) | 2011(결산) |
|--------|-------------------|------------------|----------------|
| 예산 불용액 | 1,330백만원 13.2% | 1,475백만원 6.1% | 470백만원 3.1% |
| 예산이용액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
| 예산전용액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

<표 3> 불용내역

| 회계년도 | 불용액수 및 내역 |
|-------|---|
| 2008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 130백만원(자체 예산 절감계획 이행을 통한 예산절감) - 시각예술: 140백만원(자체 예산 절감계획 이행 및 공동주최 기관간 협력강화를 통해 운영비 분담·절감) - 공연예술: 60백만원(자체 예산 절감계획 이행을 통한 예산절감) - 기타: 324백만원(공모사업 중 일부 지원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포기 등으로 인해 불용) |
| 2009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창작지원 사후지원 잔액 230백만원(3년 이내 사후지원예정) -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에 대한 사업목적 부적합으로 지원 미결정 400백만 - 위원회 위탁사업으로 운영한 다원예술매개공간 사업에 대한 문화부 감사결과에 따라 사업운영중단 300백만원 - 지원단체 사정등 사업취소,사업방식 변경등 사업 집행잔액 400백만원 |
| 2010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창작지원 292백만원, 예술전용공간지원 1,093백만원, 예술활성화지원 90백만원 등 사업비 잔액 및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1,475백만원 |
| 2011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직보수, 일용임금: 계약직과 일용직의 연도 중반 채용 등 근무기간 공백 등에 따른 미집행 잔액 각 18백만원, 2백만원 불용 - 일반수용비: 지원사업 현장평가, 지원심의 등 사업비 집행 후 잔액 34백만원 불용 - 공공요금 및 체세: 지원심의 자료 우편발송 등 집행 후 잔액 3백만원 불용 - 위탁사업비: 지원사업 평가 용역계약 체결 시 금액 조정에 따른 잔액 5백만원 불용 - 국내여비: 국내 지원사업 현장평가 출장비 집행 잔액 4백만원 불용 - 민간경상보조: 지원대상단체의 사업포기및 선정잔액 404백만 불용 |

3. 사업내용, 추진방식, 관리의 적절성

①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 장르별 대표성을 띤 전국규모의 행사의 공모제 도입을 통해 한국예술발전을 견인하려는 사업내용이 매우 구체적임
- 예술창작지원, 예술전용 공간지원, 예술행사 지원 등의 사업이 매우 구체적이어 그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음

②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글로벌 벤치마킹과 전년도 성과분석을 통해 전략을 적절하게 구성하였고,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 강화로 중장기 재원확충 및 수익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핵심사업화를 통한 안정적 조직화와 핵심인력 증강배치, 글로벌 지표의 비교분석을 통한 평가지표 설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짐
 - 현재의 추진과정과 절차에 대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전략과제가 세부사업 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의 가시화, 예산계획의 구체화 및 전사차원에서 체계성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심의의 책임성을 확립하기 위해 2010년도 초에 도입한 책임심의위원회에 의한 심의제도의 운영을 정착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특성 및 대상에 따라 예본심제, 인터뷰 심의, 실연 심사, 현장 실사 등 심의 방식의 다원화 추구하였던 노력이 돋보임
- 지원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지원신청 사업과 책임심의위원 간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 심의회피제를 의무화하였음
 - 인터넷 지원신청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고객의 지원신청 편의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지원신청 자료의 분석, 가공, 활용 등 지원심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 노력도 높이 평가함

③ 사업수행에 대한 관리·감독/통제 수단 구비

- 사업별 자율지표 설정을 통해 평가지표의 사업특성을 반영하고, 전년도 개선과제 충실성 평가를 통해 평가결과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전문적이고 입체적인 평가와 함께 실천력이 담보된 환류를 위해 문화예술 각 장르·경영·행정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이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문화일반 등 분야별 책임심의 위원으로 구성(분야별 5인, 7개 분야 총 35인)하는 방식도 타당함
- 평가부문별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항목에 1차 점수를 부여하는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현장 실사 시 확인·점검 사항을 기술하였으며 3회에 걸쳐 추가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문예위, 예술인력개발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평가 결과를 확인·점검하여 2차 점수를 부여하는 등 사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음

4.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① 종합 평가

- 예술창작지원사업의 경우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 준수와 교부·정산 시스템화를 통해 집행의 명확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였으며, 개별 지원사업의 현장평가와 분할지급을 통한 사업집행, 추진실태를 점검·과약 등의 모니터링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용되었으며 성과지표도 양호함
- 단,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집행률과 불용액을 근거로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의 예산감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2012년의 지원총액(11,500백만원)이 2011년(13,680)에 대비해 상당히 줄었으나 동사업의 예산총액은 민간단체의 부담액 증가로 인해 2011년(47,590백만원)과 2012년(47,549백만원)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2011년의 불용액에 해당하는 500백만원 내외의 지원액 감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정책 제언

- 최근 3년간 매년 상당한 액수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보다 정확한 사업계획에 근거한 예산산정과 집행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공모사업의 결과에 따라 불용액의 발생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의 수립이 요구됨

I. 평가 요약표

| | |
|-----|-------------------|
| 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 사업명 | (31) 차세대예술인력 집중육성 |

| 평가기준 | 평가 | |
|---|----|-----|
| | 예 | 아니오 |
| 1 사업추진의 타당성·필요성 | | |
| ①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 ✓ | |
| ②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다 | ✓ | |
| ③ 2012년도 및 그 이후에도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 ✓ | |
| 2 재정지원의 타당성·필요성 | | |
| ① 2012년도 및 그 이후에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 ✓ | |
| ② 재정지원의 규모가 적정하다 | ✓ | |
| 3 사업내용, 추진방식, 관리의 적절성 | | |
| ① 사업내용(세부사업, 세부과제)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 ✓ | |
| ② 사업추진방식이 적절하다 | ✓ | |
| ③ 사업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절한 통제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 ✓ | |

| 종합판정결과 | | | | | |
|--------|--------|------------|--------------|-----------------|-----|
| 정상 추진 | 조건부 준치 | | 폐지 | | |
| | 단계적 감축 | 사업내용 /방식변경 | 즉시폐지 (2013년) | 단계적폐지 (*해당연도표기) | 통폐합 |
| ✓ | | | | | |

II. 평가 의견서

1. 사업추진의 타당성 · 필요성

① 사업목적의 명확성과 구체성

- 예술계의 미래를 책임질 잠재적 역량의 젊은 예술가 및 기획인력을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목적이 명확함

② 사업의 법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동법 제16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제1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에 부합
 - 동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명시된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에 관한 조항과 부합

③ 국가적 사업 필요성

- 예술현장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역량 있는 신진 인력의 지속적 유입과 예술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인적 기반 강화가 필요
- 신진예술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공공분야의 유일한 다년간(2년) 사업으로 모든 장르를 포괄하여 지원하는 폭넓은 지원사업이라는 특수성도 고려하여야 함
- 예술인력의 발굴·육성에 대한 공공부문의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은 수혜자뿐 아니라 예술계의 성장잠재력 제고와 교육을 통해 배출되는 예술인력에 대한 예술계 현장의 수용 시스템 구축에 영향을 주므로 공익성도 높음

2. 재정지원의 타당성 · 필요성

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

- 각 지자체나 다양한 예술단체별로 사회적 지명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재정지원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임

- 차세대의 역량 있는 예술인의 발굴·육성에 대한 공공부문의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은 수혜자뿐 아니라 예술계의 성장잠재력 제고와 교육을 통해 배출되는 예술인력에 대한 예술계 현장의 수용 시스템 구축에 영향을 주므로 공익성이 높음

② 재정지원의 규모 적정성

- 역량 있는 신진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전국의 신진예술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공공분야의 유일한 다년간(2년) 모든 장르를 포괄하여 지원하는 폭넓은 지원사업임을 감안하여야 할 필요가 매우 큼
 - 특히 본 사업은 다년간(2년간) 지원사업으로 단년간 지원사업인 여타 사업과 지원방식이 다르며 위원회의 차세대집중육성사업의 경우 유일하게 7개(문학, 시각, 무용, 연극, 음악, 무용, 다원) 전 장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도 고려해야 함

<표 1> 최근 3년간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1(결산) | 2012(예산) | 2013(요구액) |
|-----------------|-------------------|-------------|-----------|
| 자체사업비 (중앙정부)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 국고보조금 | 1,065백만원 39.2% | 957백만원 % | 백만원 % |
| 지자체부담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
| 민간단체부담 | 1,649백만원 60.8% | 백만원 % | 백만원 % |
| 계 | 2,714백만원 100% | 957백만원 % | 백만원 % |

<표 2> 최근 3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09(결산) | 2010(결산) | 2011(결산) |
|--------|----------|----------|----------|
| 예산 불용액 | 52백만원 | 4백만원 | 3백만원 |
| | 3.3% | 0.3% | 0.3% |
| 예산이용액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 | % | % | % |
| 예산전용액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 | % | % | % |

<표 3> 회계연도별 불용액 및 내역

| 회계연도 | 불용내역 |
|------|--|
| 2008 | - 김혜정 등 공모선정 지원대상자의 사업포기, 집행 잔액 불용 2건 : 42백만원 |
| 2009 | - 지원선정 후 집행 잔액 불용 : 52백만원 |
| 2010 | - 워크숍비용 절감으로 인한 집행 잔액 불용 : 4백만원 |
| 2011 | - 신진예술가 워크숍 개최 비용 예산 절감액 1백만원 불용 - 지원대상자의 지원사업 추진 후 미집행 잔액 반납 2백만원 불용 |

3. 사업내용, 추진방식, 관리의 적절성

①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 음향, 조명, 무대, 의상, 분장 등 관련 분야 종사자와 기획, 행정, 경영 관련 분야 종사자 등에 대한 분야별 대상인원과 지원액에 대한 배분이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이와 함께 1년 지원과 2년 지원의 대상인원과 지원액에 대한 기초적인 배분의 근거도 명확함

②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신진예술가의 성장발판 마련 및 국가인재 육성, 공공의 지원체계 조성면에서 사업 이해 관계자 및 사업수요가 분명하며, 성장이력관리시스템, 수상실적 관리, 다양한 장르간·분야간·작품간 협업을 추구하는 노력이 양호함,

③ 사업수행에 대한 관리·감독/통제 수단 구비

- 각 사업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점검내용 및 방법이 도출되고, 사업의 보완 및 개선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해결이 적절히 이루어짐
- 현장 모니터링과 지원대상자의 자체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종합평가의 기준과 이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하는 차기년도 지원금의 처리방식도 양호함

4.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① 종합 평가

- 신진예술가의 성장발판 마련 및 국가인재 육성, 공공의 지원체계 조성면에서 사업 이해 관계자 및 사업수요가 분명하며, 성장이력관리시스템, 수상실적 관리, 다양한 장르간·분야간·작품간 협업을 추구하는 노력이 양호함,
- 각 사업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점검내용 및 방법이 도출되고, 사업의 보완 및 개선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해결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음
- 역량 있는 젊은 예술가(만 35세 이하 신진예술가, 등단 10년 미만 문인)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창작, 연구 및 연수 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젊은 예술가의 창작저변을 확대하고 차세대 중견 예술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원액을 증액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현실적 도움의 확대를 모색해야 하나, 선정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과 이를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② 정책 제언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자 선발과정의 정성평가와 함께 예술분야가 갖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신진예술가들의 선발과정에서 자격요건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정량지표의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임
- 차세대 이력관리시스템 구축(arkoayaf or kr)의 활용성에 대한 검토와 이의 유지 및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I. 평가 요약표

| | |
|-----|---------------|
| 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 사업명 | (32) 국제예술교류지원 |

| 평가기준 | 평가 | |
|---|----|-----|
| | 예 | 아니오 |
| 1 사업추진의 타당성 · 필요성 | | |
| ①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 ✓ | |
| ②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다 | ✓ | |
| ③ 2012년도 및 그 이후에도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 ✓ | |
| 2 재정지원의 타당성 · 필요성 | | |
| ① 2012년도 및 그 이후에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 ✓ | |
| ② 재정지원의 규모가 적정하다 | ✓ | |
| 3 사업내용, 추진방식, 관리의 적절성 | | |
| ① 사업내용(세부사업, 세부과제)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 | ✓ |
| ② 사업추진방식이 적절하다 | ✓ | |
| ③ 사업수행에 대한 관리 ·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절한 통제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 ✓ | |

| 종합판정결과 | | | | | |
|---|--------|------------|--------------|-----------------|-----|
| 정상 추진 | 조건부 준치 | | 폐지 | | |
| | 단계적 감축 | 사업내용 /방식변경 | 즉시폐지 (2013년) | 단계적폐지 (*해당연도표기) | 통폐합 |
| | ✓ | ✓ | | | |
| 세부사업 중 “국제문화기관협력 및 정보서비스”의 지원액에 해당하는 300백만 원을 감축하고 “국제교류거점프로그램 지원사업”과 통합하여 시행해야 할 것 임 | | | | | |

II. 평가 의견서

1. 사업추진의 타당성 · 필요성

① 사업목적의 명확성과 구체성

- 각종 국제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하는 예술인(단체) 지원을 통해 우리 예술가들의 창작역량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뚜렷함
 - 예술위원회가 자체 기획·발굴한 국외 창작거점에 우리 예술가를 파견하여 예술가들의 창작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해외 창작 여건 조성이라는 구체적 목표도 확보
- 국내외 문화예술 기관 간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사업을 통해 예술가들의 국제 교류사업 기반을 조성의 목표도 타당함

② 사업의 법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의 국제문화예술 교류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11 5 25>
 -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6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
 -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 10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③ 국가적 사업 필요성

- 해외 및 국내에서 개최되는 민간 차원의 국제 문화예술교류 활동 등을 공모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우리 예술의 창작역량 및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국내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이 국제 교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문은 재정지원임
-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따른 경비 지원을 통해 민간의 국제교류 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2. 재정지원의 타당성 · 필요성

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

- 장르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연극, 무용, 음악분야 단체에 대한 창조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이 필요함
-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한 한류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집약적인 현대적 순수예술(공연, 전시, 문학행사 등)을 해외에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협력국의 순수예술을 동시에 소개하는 쌍방향 국제 교류 형식의 예술활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매우 적절함

<표 1> 최근 5년간 국제교류분야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요 현황

(단위 : 건수, 천원)

| 구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신청건수 | 710 | 793 | 1,180 | 827 | 836 |
| 결정건수 | 262 | 206 | 290 | 224 | 251 |
| % | 36.9% | 26.0% | 24.6% | 27.1% | 30.0% |
| 신청금액 | 18,617,092 | 22,189,560 | 32,501,470 | 24,180,121 | 22,010,508 |
| 결정금액 | 4,161,000 | 3,864,007 | 4,486,408 | 5,773,783 | 4,534,723 |
| % | 22.4% | 17.4% | 13.8% | 23.9% | 20.6% |

② 재정지원의 규모 적정성

-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집행률과 불용액 및 그 내역을 근거로 고려할 때, 상당한 액수의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므로 2012년 현재의 지원규모에서 일정액수의 지원액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1> 최근 2년간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1(결산) | 2012(예산) |
|-----------------|--------------------|--------------------|
| 자체사업비 (중앙정부) | 백만원 | 백만원 |
| 국고보조금 | 4,748백만원 26.6% | 4,171백만원 26.6% |
| 지자체부담 | 백만원 % | 백만원 % |
| 민간단체부담 | 13,124백만원 73.4% | 11,529백만원 73.4% |
| 계 | 17,872백만원 100% | 15,700백만원 100% |

※ 2012년도 일부사업(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해외창작거점 예술가과견사업 등) 수시 공모가 진행되고 있어, 민간단체부담 및 총계 확정치는 하반기에 산출 가능 이에 '11년도 민간단체부담 비중을 토대로 '12년도 민간단체부담은 추정치로 기재하였음

<표 2> 최근 3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09(결산) | 2010(결산) | 2011(결산) |
|--------|-----------------|----------------|----------------|
| 예산 불용액 | 583백만원 11.2% | 345백만원 5.4% | 316백만원 5.7% |
| 예산이용액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
| 예산전용액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

<표 3> 회계연도별 불용 내역

| 회계연도 | 불용내역 |
|-------|--|
| 2008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환율 폭등 및 주최측 초청 취소 등으로 인한 지원 대상 단체 사업 포기(523백만원) - 유럽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인한 해외기관 방문 등 교류사업 및 공동협력사업 취소 등(186백만원) |
| 2009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공모사업의 단체사정에 의한 포기(19건, 284백만원) - 조류독감 및 신종플루 등으로 인한 중요 국제행사 및 해외기관 방문 등 교류사업 취소 등(583백만원) |
| 2010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공모사업의 단체사정에 의한 포기(9건, 186백만원) 및 선택과 집중에 의거한 지원대상 업선에 따른 미결정 사업 잔액(44백만원) - 해외기관교류및해외정보서비스 사업 : 폭설, 현지 사정 등으로 인한 해외기관 및 전문가 방한 행사의 취소 - 외화 환율 변동에 따른 환율 차액 등 총 70백만원 불용 |
| 2011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수용비 : 집행잔액 3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교류재단, 해외문화홍보원 등 유관기관 공동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해외에 술인초빙사업 통역료 등 예산 일부 절감 - 공공요금및제세 : 사업취소 등 3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초 시각예술 거점으로 개발 예정이었던 중국 KU 레지던스 공간 개발계획이 공간 계약 등 중국 현지 상황에 의해 취소되어 공공요금및제세 30백만원 불용 발생 ■기타 환율차액 및 수수료 절감 - 임차료 : 예산 절감을 통한 집행잔액 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교류재단, 해외문화홍보원 등 유관기관 공동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해외에 술인초빙사업 임차료(대관료, 통역장비 대여비 등) 예산 절감 - 국외여비 : 예산 절감을 통한 집행잔액 3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교류재단, 해외문화홍보원 등 유관기관 공동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해외에 술인초빙사업 및 기관교류 국외여비절감 ■기타 환율차액으로 인한 절감 - 사업추진비 : 사업추진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6백만원 - 민간경상보조 : 지원대상의 사업포기 및 잔액 반납 등 20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 해외 주최측의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한 단체 사업포기 3건 47백만원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공모) : 사업포기 2건 12백만원,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선정 잔액 36백만원 ■해외창작거점예술가과건 : 하반기 발굴 신규거점의 경우 과건사업 및 협력사업이 2012년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152백만원 불용 발생(본 사업들은 2012년 추진 예정) ■국제문화기관협력사업 : 지원대상의 사업집행잔액 반납 3,867천원 |

3. 사업내용, 추진방식, 관리의 적절성

①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 민간국제예술특집행사지원,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해외예술교류거점개발운영지원 등과 같은 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이며 명확함
 - 단, 세부사업 중 “국제문화기관협력 및 정보서비스”는 사업의 내용이 기타 세부사업과 중복되어 차별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이를 나머지 세부사업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국제교류거점프로그램지원사업의 경우, 글로벌 창작역량 강화, 해외 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해외 진출 플랫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목적이 뚜렷하고, 민간보조사업 형태의 사업 방식도 사업 효과를 극대화시킨 성과로 보여짐,

②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전년실적대비 평균창작작품수 34.7%, 평균 관람객수 147.5%, 지원대상 만족도 11.8% 상향 목표를 설정, 지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함
 - 공모라는 객관적인 절차와 선정 방식을 취하고 있어 수혜대상자 선정 과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일반공모의 경우에도 신청규모와 결정규모를 비교할 때 수요예측이 적정함
- 글로벌 창작역량 강화, 해외 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해외 진출 플랫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목적이 뚜렷함
 - 민간보조사업 형태의 사업 방식도 사업 효과를 극대화시킨 성과로 보여짐, 전사 사업 목표에서 세부 목표의 성과 목표까지의 인과관계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③ 사업수행에 대한 관리·감독/통제 수단 구비

- 외부 기관, 현장 모니터링, 내부 평가 등의 모니터링 체계가 적절히 구축됨, 모니터링을 통해 도출된 점검 결과가 충실하게 분석되었으며, 점검 내용 및 결과에 따른 개선 과제가 도출되고 실제 조치되는 등 문제 해결이 적절함
- 특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도출된 점검 결과가 충실하게 분석되었으며, 점검 내용 및 결과에 따른 개선 과제가 도출되고 실제 조치되는 등 문제 해결이 적절함

4.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① 종합 평가

- 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의 경우, 전년실적대비 평균창작작품수 34.7%, 평균 관람객수 147.5%, 지원대상 만족도 11.8% 등으로 상향 목표를 설정, 지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적절함
- 공모라는 객관적인 절차와 선정 방식을 취하고 있어 수혜대상자 선정 과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특히 일반공모의 경우 신청규모와 결정규모를 비교할 때 수요예측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집행률과 불용액 및 그 내역을 근거로 고려할 때, 상당한 액수의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적절한 수준의 지원액 감축이 필요함
 - 최근 3년간의 불용액규모를 고려할 때, 전체 예산에서 300백만원의 감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국제문화기관협력 및 정보서비스”사업이 “국제교류거점프로그램 지원사업”과 차별성이 없음을 고려하여 두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

② 정책 제언

- 장기적으로 예산집행률 및 성과지표의 목표치 미달성, 사업의 목적인 ‘문화예술 창작역량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창작 작품의 수만 아니라 품질을 정성적으로 평가할 지표를 개발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I. 평가 요약표

| | |
|-----|-----------------|
| 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 사업명 | (33)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

| 평가기준 | 평가 | |
|---|----|-----|
| | 예 | 아니오 |
| 1 사업추진의 타당성·필요성 | | |
| ①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 ✓ | |
| ②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다 | ✓ | |
| ③ 2012년도 및 그 이후에도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 ✓ | |
| 2 재정지원의 타당성·필요성 | | |
| ① 2012년도 및 그 이후에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 ✓ | |
| ② 재정지원의 규모가 적정하다 | ✓ | |
| 3 사업내용, 추진방식, 관리의 적절성 | | |
| ① 사업내용(세부사업, 세부과제)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 ✓ | |
| ② 사업추진방식이 적절하다 | ✓ | |
| ③ 사업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절한 통제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 ✓ | |

| 종합판정결과 | | | | | |
|--------|--------|---------------|-----------------|--------------------|-----|
| 정상 추진 | 조건부 준치 | | 폐지 | | |
| | 단계적 감축 | 사업내용/ 방식변경 | 즉시폐지 (2013년) | 단계적폐지 (*해당연도표기) | 통폐합 |
| ✓ | | | | | |

II. 평가 의견서

1. 사업추진의 타당성 · 필요성

① 사업목적의 명확성과 구체성

- 사회적·경제적·지리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소의 계층이 창의적 힘을 공여 받아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문화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이 명확함
- 문화바우처,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랑티켓,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제작지원, 우수문학도서보급, 공공박물관 및 미술관전시 프로그램지원 등 사업의 목적과 내용 또한 매우 구체적임

② 사업의 법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 제15조의 제3항(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제15조 제4항(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의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에 근거를 갖고 있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3항 제4호 ‘문화예술진흥 및 보존사업’에 근거하고 있음

③ 국가적 사업 필요성

- 경제적인 제약으로 문화를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물질적 생존 외에 국민의 행복을 배려하는 문화복지 정책 필요성이 증대되는 반면,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의 수요대상인 경제적·지리적·사회적 소외계층의 대상 범위가 워낙 넓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할 때 국가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임

<표 1>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사업의 계량적 효과

| 세부사업 | 성과지표 | 성과 | | | | | 연평균 성장률 | 전년대비 성장률 |
|-------------------------|---------------|-----------|-----------|-----------|-----------|-----------|---------|----------|
|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 문화소외지역 및계층대상 문화나눔 | 수혜자 만족도(점) | 77.80 | 82.90 | 85.50 | 85.20 | 86.5 | 2.7% | 1.5% |
| | 수혜자수(명) | 2,327,819 | 1,447,689 | 1,666,024 | 2,717,565 | 3,010,198 | 6.6% | 10.8% |

2. 재정지원의 타당성 · 필요성

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

- 국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활동, 그리고 그 사회·경제적 중요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문화예술 향유권이 문화복지 차원의 국민기본권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라는 관점에서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함
- 본 사업의 결과로 문화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소외계층의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 함께 그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향후에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2> 복권기금문화나눔사업 수혜자수 및 만족도점수 연도별 실적

| 성과지표 | 2006년 실적 | 2007년 실적 | 2008년 실적 | 2009년 실적 | 2010년 실적 | 2011년 실적 |
|--------|----------|------------|------------|------------|------------|------------|
| 수혜자 수 | 164,554명 | 1,924,250명 | 1,167,127명 | 2,154,246명 | 2,717,565명 | 2,974,260명 |
| 만족도 결과 | 80점 | 86점 | 83점 | 85점 | 85점 | 87점 |

② 재정지원의 규모 적정성

- 중앙 및 지방정부예산만으로 문화복지 시책을 완수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존재함에 따라 현재 총 수요의 일부만을 충족시키고 있는 형편이므로 이러한 기반이 자리 잡기 위한 공공 지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2011년 지원규모의 대폭적인 확대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문화바우처카드의 불용액이 큰 이유는 카드 결제가 가능한 온오프라인의 문화예술업종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화예술인프라가 부족한 농산어촌의 경우 문화카드 이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 전액 사용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 후 소액잔액 발생 시 이용자들이 사용 포기가 발생할 수 있는 관계로 문화카드 금액의 100% 완전소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또한 2012년 3월 31일까지 이용하고 남은 상기 잔액은 문예진흥기금(복권기금) 반환금으로서 정산 절차에 따라 금액 확정 후,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전액 반납 처리하였음

<표 3> 최근 3년간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1(결산) | 2012(예산) | 2013(요구액) |
|--------------------|--------------------|--------------------|--------------------|
| 자체사업비 (중앙정부)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 국고보조금 (복권기금전입금) | 48,000백만원 73.5% | 57,400백만원 72.5% | 72,700백만원 72.1% |
| 지자체부담 | 17,182백만원 26.3% | 21,631백만원 27.3% | 27,931백만원 27.7% |
| 민간단체부담 | 131백만원 0.2% | 130백만원 0.2% | 130백만원 0.2% |
| 계 | 65,313백만원 100% | 79,161백만원 100% | 100,761백만원 100% |

<표 4> 최근 3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09(결산) | 2010(결산) | 2011(결산) |
|--------|--------------------|--------------------|--------------------|
| 예산 불용액 | 114백만원 0.5% | 82백만원 0.3% | 5,817백만원 12.1% |
| 예산이용액 | 21,686백만원 99.5% | 23,618백만원 99.7% | 42,183백만원 87.9% |
| 예산전용액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

<표 5> 2011년 불용액과 세부사업별 예산 잔액

(백만원)

| 기능별 | 예산액 | 전용 | 예산현액 | 집행액 | 이월액 | 불용액 |
|----------------------|--------|----|--------|--------|-----|-------|
|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 48,000 | - | 48,000 | 42,183 | - | 5,817 |
| 문화바우처 | 24,500 | - | 24,500 | 19,126 | - | 5,374 |
| 소외계층문화순회 | 8,000 | - | 8,000 | 7,973 | - | 27 |
| 사랑티켓 | 2,400 | - | 2,400 | 2,064 | - | 336 |
| 지방문예회관특별프로그램 제작지원 | 4,800 | - | 4,800 | 4,725 | - | 75 |
| 생활문화공동체 | 1,200 | - | 1,200 | 1,195 | - | 5 |

3. 사업내용, 추진방식, 관리의 적절성

①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 문화바우처,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랑티켓, 지방문예회관특별프로그램제작지원, 우수문학도서보급, 공공박물관 미술관전시 프로그램지원 등 사업의 목적과 내용 또한 매우 구체적임
- 동 사업은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어 세부사업 차원에서는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없으며, 각 사업별 내용의 측면에 있어 사업목적, 기대효과, 수혜대상, 사업내용이 다르므로 사업 간 차별화가 뚜렷함
- 공연나눔항목의 세부사업 중 하나인 “사랑티켓사업”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3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2012. 2. 18 조문신규 제정)에 근거하여 사랑티켓의 사업 대상인 아동·청소년과 노인층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이는 법적 근거에 의한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사업의 사업 목적과 부합함

②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의 목적(소외계층의 문화향수권 신장, 문화양극화 해소, 문화복지정책실현 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전에 수립된 계획에 기초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뤄짐,
 -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합리성을 적절히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재원 집행률 100%를 달성함
- 2010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영지침」도 체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현재의 상황에서 이와 같은 방식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③ 사업수행에 대한 관리·감독/통제 수단 구비

-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자 하는 지표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실질적인 성과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사업시행 주관단체 대상 현장점검, 사업추진 점검 워크숍개최, 분기별 사업 추진 현황 및 수시 보고 등 효과적 통제수단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4.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① 종합 평가

- 소외계층 문화향수권 신장, 문화양극화 해소, 문화복지정책 실현 등 사업의 목적이 명료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수립된 계획에 기초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여, 현재와 같은 수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② 정책 제언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집행현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다 원할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또한 문화바우처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자인 개인들의 선택과 사용방법의 제약으로 총액 대비 20% 내외의 불용액(낙전)이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마련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I. 평가 요약표

| | |
|-----|------------------|
| 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 사업명 | (34) 문화예술사회적인식제고 |

| 평가기준 | 평가 | |
|---|----|-----|
| | 예 | 아니오 |
| 1 사업추진의 타당성·필요성 | | |
| ①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 ✓ | |
| ②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다 | ✓ | |
| ③ 2012년도 및 그 이후에도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 ✓ | |
| 2 재정지원의 타당성·필요성 | | |
| ① 2012년도 및 그 이후에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 ✓ | |
| ② 재정지원의 규모가 적정하다 | ✓ | |
| 3 사업내용, 추진방식, 관리의 적절성 | | |
| ① 사업내용(세부사업, 세부과제)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 | ✓ |
| ② 사업추진방식이 적절하다 | | ✓ |
| ③ 사업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절한 통제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 ✓ | |

| 종합판정결과 | | | | | |
|--|--------|------------|--------------|-----------------|-----|
| 정상 추진 | 조건부 준치 | | 폐지 | | |
| | 단계적 감축 | 사업내용 /방식변경 | 즉시폐지 (2013년) | 단계적폐지 (*해당연도표기) | 통폐합 |
| | | ✓ | | | |
| “기부금사업”과 “기업과 예술의 만남 활성화사업”은 기부금사업과 차별성이 크지 않으므로 이를 “기부금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 | | |

II. 평가 의견서

1. 사업추진의 타당성 · 필요성

① 사업목적의 명확성과 구체성

- 기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민간영역의 예술분야 기부 활성화,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활성화 및 원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인식 제고 및 창작 여건 개선이라는 목표는 명확함

② 사업의 법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법적 근거가 명확함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7호(기부금의 손금 불산입),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등의 근거를 갖고 있음

③ 국가적 사업 필요성

- 기업과 예술단체의 결연을 유도하여 기업 후원액:국고(기금) 지원액의 비율을 1:1 이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문화예술 사회공헌 및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역할 자체가 모호하며 명확하지 않음
- 일몰제로 운영되어 지원대상자가 사망시 사업이 종료될 예정인 [원로문예인 복지지원]은 여타 유관사업에 편입하여 세부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임

2. 재정지원의 타당성 · 필요성

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

- 동 사업은 기부금 사업, 특히 조건부 기부금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건부 기부금 사업의 경우 기부자(법인/개인)의 의사에 의해 지원받을 예술단체를 사전에 지정하여 기부한 이후에 해당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고려해야 함

- 기부금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보조금은 기부금총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준에서 운용비를 상정하고 있으며 이 또한 기부금에서 충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의 필요성과 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② 재정지원의 규모 적정성

- 동 사업의 보조사업예산은 기부금 사업과 원로문예인복지지원사업 및 기업과예술의만남 활성화사업이며, 특히 조건부 기부금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특성상, 기부액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 현재와 같은 수준의 지원액수준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조건부 기부금 사업의 경우 기부자(법인/개인)의 의사에 의해 지원받을 예술단체를 사전에 지정하여 기부한 이후에 해당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12년도 자체사업비 추정의 어려움 : 연초에는 예술단체의 자체사업비를 알 수 없고, <기부자의 조건부 기부→기부금 입금→예술단체의 지원신청→지원금 지급>의 프로세스가 연말까지 계속되어 연도 중반 자체사업비에 대한 추계가 어려운 점이 있음

<표 1> 최근 3년간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1(결산) | 2012(예산) | 2013(요구액) |
|-----------------|---------------------|---------------|---------------|
| 자체사업비 (중앙정부)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 국고보조금 | 16,847백만원 10.7% | 6,975백만원 % | 6,953백만원 % |
| 지자체부담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
| 민간단체부담 | 140,762백만원 89.3% | 백만원 % | 백만원 % |
| 계 | 157,609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

<표 2> 최근 3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09(결산) | 2010(결산) | 2011(결산) |
|--------|----------|----------|----------|
| 예산 불용액 | 3,023백만원 | 203백만원 | 1,535백만원 |
| | 23.1% | 1.3% | 7.9% |
| 예산이용액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 | % | % | % |
| 예산전용액 | 4,998백만원 | 8,410백만원 | 9,844백만원 |
| | 38.2% | 51.9% | 50.8% |

<표 3> 회계연도별 불용액 및 내역

| 회계연도 | 불용내역 |
|------|---|
| 200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사업 : 조건부 기부금 사업 689백만원(기부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지출예산 불용처리), 실명제 기부금 잔액 18백만원 - 원로문예인복지지원 : 지원대상(원로문예인) 사망에 따른 지원금 잔액 30백만원 - 문화예술홍보및간행물발간 : 11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서적발간사업 잔액 61백만원 · 문화예술홍보사업 잔액 56백만원 - 정책연구조사 : 163백만원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용역연구 과제 수행을 축소하고 위원회 연구인력을 활용한 자체 연구과제 수행 확대 : 122백만원 · 해외조사연구출장 및 업무추진비 절감으로 41백만원 불용 |
| 200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사업 : 조건부 기부금 사업 2,246백만원 - 원로문예인복지지원 : 지원대상(원로문예인) 사망에 따른 지원금 잔액 66백만원 - 문화예술홍보및간행물발간 : 38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간행물발간사업 중 한국현대예술소개책자 출판사 선정 지연 등으로 인한 미집행 : 303백만원 · 문화예술홍보사업 잔액 78백만원 - 정책연구조사 : 330백만원 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용역연구 과제 수행 축소/입찰에 의한 계약금액 축소 및 해외출장/업무추진비 절감 |

| | |
|------|--|
| 20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사업 : 조건부 기부금 사업 27백만원 불용 - 원로문예인복지지원 : 지원대상(원로문예인) 사망에 따른 지원금 잔액 25백만원 - 문화예술홍보및간행물발간 : 2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홍보사업 잔액 16백만원 · 문화예술간행물발간사업 잔액 9백만원 - 정책연구조사 : 126백만원 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용역연구 과제 수행 축소 및 해외출장 및 업무추진비 절감 |
| 2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사업 : 조건부 기부금 사업 1,405백만원 불용 - 원로문예인복지지원 : 지원대상(원로문예인) 사망에 따른 지원금 잔액 34백만원 - 문화예술홍보및간행물발간 : 28백만원 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홍보 사업 추진후 잔액 불용 - 정책연구조사 : 68백만원 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용역연구 과제 수행 축소/입찰에 의한 계약금액 축소 및 해외출장/업무 추진비 절감 |

3. 사업내용, 추진방식, 관리의 적절성

①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 문화예술 홍보와 간행물 발간, 기부 프로그램 운영, 조사 연구 추진 등을 통한 사업내용이 모호함
- 문화예술분야 기부 프로그램 운영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한 문화예술지원사업 재원의 다각화, 민간영역의 기부 공감대 형성 및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구체적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함
-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예술창작 기반 조성과 기업 및 예술단체의 사회적 책임 제고라는 목표는 예술단체에 대한 기업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타당함

②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문화예술의 가치제고를 위한 홍보 및 간행물 발간을 통해 장기적으로 예술시장 확대를 위한 고유사업으로 예술의 사회적 가치의 확산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수요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됨

- 전문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현대예술 해외소개시리즈에 대한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등 사업 추진방식이 효율적임,
- 웹진 구독자 확대라는 성과목표 측정을 위해 ‘웹진 배포대상처수’(42,105)를 자율지표로 설정·운영하고 있는 것도 높이 평가할 수 있음
- 단, “기부금사업”과 “기업과 예술의 만남 활성화사업”은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분리하여 운영 중인 것을 고려할 때, 두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의 적절한 추진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③ 사업수행에 대한 관리·감독/통제 수단 구비

- 사업계획에 맞는 적절한 재원집행 및 다면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기부금모금에 따른 사업비의 비율도 적절하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및 평가 절차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외부전문가와 위원회 자체 사업평가관리단 운영을 통해 적절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전년대비 기부금 유치실적, 기업과 예술단체 간 결연건수, 매칭펀드 지원금액이 증가하였으며, 소셜펀딩으로 사회공헌에 대한 참여를 부유 계층만이 아닌 모든 계층으로 확산시키는 등 사회공헌의 인식과 가치 제고 등 사업효과성이 인정됨
- 기부금 모금 등의 실적에서 효과성도 검증되었음
 - 단, 기부금사업이 활성화된 이후 재기부율, 소액기부율, 재능기부에 대한 만족도 등 파급효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4.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① 종합 평가

-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지원사업의 경우 문화예술위원회의 각종 경영활동과 예술현장에 대한 정책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사업으로서의 목적이 분명하며, 유사사업과의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가 차별화 되어 있음
- 위원회의 역할로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모금을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며, 그들에게 더 많은 기부금이 지원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을 주지하고 노력하는 바, 기부금총액의 증가로 나타나는 성과도 매우 뛰어남
- 원로문예인복지지원사업은 그 성격이 전체사업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이미 일몰제 정액지원사업으로 실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이를 현행과 같이 존속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단 “기부금사업”과 “기업과 예술의 만남 활성화사업”은 기부금사업과 차별성이 크지 않으므로 이를 기부금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② 정책 제언

- 문화예술홍보 및 간행물 발간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에 맞는 적절한 재원집행 및 다면적인 모니터링 체계운영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기관홍보를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구축 및 사업 전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기부금사업의 경우 기부금모금등에서의 효과는 검증되었지만, 기부금사업이 활성화된 이후 재기부율, 소액기부율, 재능기부에 대한 만족도평가와 이의 확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